

제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46
----------	------

제출년월일 : 2008년 4월 일

제출자 : 제천시장

1. 제안이유

제천시 주차장조례에서 적용한 상위법의 법 조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본문의 인용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3조제4항제4호 중 “경자동차(800cc미만)”를 “경형자동차”로 하고

○ 제6조제1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사유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은 시장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다만, 사유토지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약에 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고, 시장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시장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수탁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시에 납부해야 할 금액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 【별표 1】 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급지구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주차장의 신설 및 기타 변동사유 발생시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가. 1급지 : 노상1지구, 중앙시장2지구

- 나. 2급지 : 노상2지구, 노상4지구, 노상5지구, 노상7지구, 중앙시장1지구, 용두천1지구, 용두천2지구, 용두천3지구, 중앙교차로, 명동교차로, 역전교차로, 기타1.3급지 명시되지 않은 주차장
- 다. 3급지 : 노상3지구, 노상6지구, 용두천4지구, 용두천5지구, 용두천6지구, 역전1주차장, 역전2주차장, 명동주차장, 의병교차로

3. 의안전문 : 불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불임

5. 관계법령 : 불임

첨 부 1. 의안전문 1 부

2. 신구조문대비표 1 부

3. 관련법령 1 부

4.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 사본 1 부

제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4호 중 “경자동차(800cc미만)” 을 “경형자동차”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사유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은 시장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다만, 사유토지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약에 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고, 시장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시장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수탁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시에 납부해야 할 금액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별표1】 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급지구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주차장의 신설 및 기타 변동사유 발생시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가. 1급지 : 노상1지구, 중앙시장2지구

나. 2급지 : 노상2지구, 노상4지구, 노상5지구, 노상7지구, 중앙시장1지구, 용두천1지구, 용두천2지구, 용두천3지구, 중앙교차로, 명동교차로, 역전교차로, 기타1.3급지 명시되지 않은 주차장

다. 3급지 : 노상3지구, 노상6지구, 용두천4지구, 용두천5지구, 용두천6지구, 역전1주차장, 역전2주차장, 명동주차장, 의병교차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 표

신·구 조문 대비표

현	개
<p>【별표 1】</p> <p><비고></p> <p>1-3. (생략)</p> <p>4. (생략)</p> <p>가. 1급지 : 노상1지구</p> <p>나. 2급지 : 노상2지구, 노상4지구, 노상7지구, <u>중앙시장지구</u>, 용두천1지구, 용두천2지구, 용두천3지구, 중앙교차로, 역전교차로, 기타 1·3급지에 명시되지 않은 주차장</p> <p>다. 3급지 : 노상3지구, 노상6지구, 용두천 4지구, <u>역전주차장</u>, 명동주차장, 의병교차로</p> <p>5-7. (생략)</p>	<p>【별표 1】</p> <p><비고></p> <p>1-3. (현행과 같음)</p> <p>4. (현행과 같음)</p> <p>가. 1급지 : 노상1지구, <u>중앙시장2지구</u></p> <p>나. 2급지 : 노상2지구, 노상4지구, 노상7지구, <u>중앙시장1지구</u>, 용두천1지구, 용두천2지구, 용두천3지구, 중앙교차로, 역전교차로, 기타 1·3급지에 명시되지 않은 주차장</p> <p>다. 3급지 : 노상3지구, 노상6지구, 용두천 4지구, <u>역전1주차장</u>, <u>역전2주차장</u>, 명동주차장, 의병교차로</p> <p>5-7. (현행과 같음)</p>

관련법규 발췌

주차장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第7條 (路上駐車場의 設置 및 廢止) ① 路上駐車場은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이를 設置한다. 이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제1항의 規定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12.14, 1995.12.29, 2002.2.4>

第12條 (路外駐車場의 設置 등<개정 1999.2.8>) ① 路外駐車場을 設置 또는 廢止한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2.8, 2003.12.31>

第8條 (路上駐車場의 管理) ① 路上駐車場은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駐車場을 設置한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管理하거나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으로부터 그 管理를 委託받은 者(이하 “路上駐車場管理受託者”라 한다)가 管理한다.<改正 1991.12.14, 1995.12.29>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路上駐車場管理受託者の 資格 기타 路上駐車場의 管理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第9條 (路上駐車場의 駐車料金徵收 등) ①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路上駐車場을 管理하는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區廳長 또는 路上駐車場管理受託者(이하 이들을 합하여 “路上駐車場管理者”라 한다)는 駐車場에 自動車를 駐車하는 者로부터 駐車料金을 받을 수 있다. 다만, 道路交通法 제2조제20호의 規定에 의한 緊急自動車가 駐車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1983.12.31, 1990.4.7, 1991.12.14, 1995.12.29, 2003.7.29, 2005.5.31>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駐車料金의 料率 및 徵收方法등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이 경우 路上駐車場의 效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駐車料金을 그 利用時間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1.12.14>

③ 路上駐車場管理者는 第8條의2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第1項

의 规定에 의한 駐車料金외에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駐車料金의 4倍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加算金을 받을 수 있다. <개정 1991.12.14, 2000.1.28>

④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인 路上駐車場管理者는 第1項의 规定에 의한 駐車料金이나 第3項의 规定에 의한 加算金(이하 "駐車料金등"이라 한다)을 納付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 地方稅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이를 徵收할 수 있다. <개정 1983.12.31, 1991.12.14, 1995.12.29>

⑤ 路上駐車場管理受託者인 路上駐車場管理者는 駐車料金등을 納付하지 아니한 者에 대한 駐車料金등의 徵收를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委託할 수 있으며,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이를 委託받은 때에는 第4項의 规定에 準하여 徵收할 수 있다. <신설 1983.12.31, 1991.12.14, 1995.12.29>

第13條 (路外駐車場의 管理) ① 路外駐車場은 당해 路外駐車場을 設置한 者가 관리한다. <개정 1999.2.8>

②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路外駐車場을 設置한 경우 그 관리를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외의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개정 1999.2.8>

③ 第2項의 规定에 의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 委託을 받아 路外駐車場을 管理할 수 있는 者의 資格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新設 1983.12.31, 1991.12.14, 1995.12.29>

第14條 (路外駐車場의 駐車料金徵收등) ① 第13條의 规定에 의하여 路外駐車場을 管理하는 者(이하 "路外駐車場管理者"라 한다)는 駐車場에 自動車를 駐車하는 者로부터 駐車料金을 받을 수 있다.

②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設置한 路外駐車場의 駐車料金의 料率과 徵收方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1983.12.31, 1995.12.29, 1999.2.8, 2003.7.2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5.11 법률 제8423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 (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할 수 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한시법:2016.12.31>

제18조 (국·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시설(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인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한 것에 한한다)을 「국유재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이하 "국·공유지"라 한다)에 관리청의 협의를 받아 설치한 경우 그 사용료·대부료 또는 접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면율
2. 도로 및 하천의 사용료등 : 「도로법」 및 「하천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감면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유지의 사용료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은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주차장, 진입로 및 통행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
2. 비 가리개, 공동창고 및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및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상인회 사무실 등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제19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 및 시장활성화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시장 또는 시장활성화구역 안에 있거나 인접한 것에 한한다)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차장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상인회 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5조 (상인회)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설 및 경영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에 대한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의 관리업무(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그 밖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 및 시장활성화구역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제67조 (시장관리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시장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는 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11.16 대통령령 제20390호]<한시법:2016.12.31>

제7조 (국·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에 따라 감면한다.

1. 국유재산의 사용료등 :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2.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80조 (연체료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되어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12.30 대통령령 제19816호]

제80조 (연체료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체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다시 납부고지하되, 최후의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전단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일부터 3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1년에 1회 이상 독촉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 연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 : 연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연 15퍼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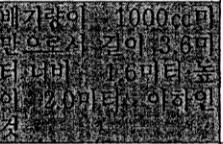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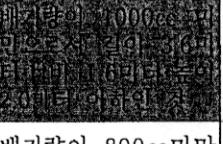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12.13 건설교통부령 제594호]

제2조 (자동차의 종별구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규모별 및 유형별로 별표 1과 같이 세분한다.

[별표 1] <개정 2003.11.22, 2006.6.9 ; 음영부분 시행일 2008.1.1>
자동차의 종류(제2조관련)

1. 규모별 세부기준

종 류	경 형	소 형	중 형	대 형
승용 자동차	배기량이 800cc 미만으로서 길이 3.5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500cc 미만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500cc이상 2,000cc 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배기량이 2,000cc 이상이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 하는 것
승합 자동차	배기량이 8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화물 자동차	배기량이 800cc 미만으로서 길이 3.5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최대 적재량이 1톤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최대 적재량이 1톤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특수 자동차	배기량이 800cc 미만으로서 길이 3.5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제천시 공고 제2008 - 385

제천시주차장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02.

제 천 시 장

제천시주차장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제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제천시 주차장설치조례에서 적용한 상위법의 법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본문의 인용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3조제4항제4호 중 「경자동차(800cc미만)」 을 「경형자동차」로
- 제6조제1항 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사유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은 시장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로 개정
- 제6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제3호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으로,
「다만, 사유토지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약에 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고, 시장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시장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수탁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시에 납부해야 할 금액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 【별표 1】 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급지구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주차장의 신설 및 기타 변동 사유 발생시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가. 1급지 : 노상1지구, 중앙시장2지구

나. 2급지 : 노상2지구, 노상4지구, 노상5지구, 노상7지구, 중앙시장1지구, 용두천1지구, 용두천2지구, 용두천3지구, 중앙교차로, 명동 교차로, 역전교차로, 기타1.3급지 명시되지 않은 주차장

다. 3급지 : 노상3지구, 노상6지구, 용두천4지구, 용두천5지구, 용두천6지구, 역전1주차장, 역전2주차장, 명동주차장, 의병교차로」로 개정 함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3월 6일까지 제천시장(참조 교통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265, FAX 641-5299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기타 참고 사항 등

★지방행정주사	교통팀장				
지방행정주사(의견있음)		지역경제팀장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결과보고서

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조례명 : 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공고번호 : 제천시 공고 제2008-385호
3. 공고기간 : 2008. 02. 15 - 03. 06(21일)
4. 공고매체 : 제천시보 및 제천시홈페이지(입법예고)
5. 공고내용 : “불 암”
6. 공고결과
 - 조회수 : 95명
 - 의견제시자 : 의회 전문위원 최석영
 - 의견내용

공고 내용	의견 제시 내용	비고
<p>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 제2항 및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관리수탁자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하되, 입찰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사유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시장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다만, 사유토지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약에 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고, 시장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시장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수탁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8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경감 할 수 있다</p>	<p>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p> <p>-----. 다만, 사유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시장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다만, 사유토지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약에 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고, 시장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시장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수탁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시예 납부해야 할 금액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p>	

○ 의견 제기사유 :

- 제6조 제1항 단서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은--- 이라고 해야 정확할 것 같음

- 제6조 제2항의 단서 끝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 등의 8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이라고 했기 때문에 몇 퍼센트인지 정하는 것이 맞음

불 임 공고안 1부(별지) 끝

[지역경제팀/지방행정주사/이종한] : 제6조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관련조항을 삽입할 시 관련법이 개정되면 제천시주차장조례를 추가 개정해야 하므로 당초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